

의안번호	2202764
의 퇴 인	전재수의원
회 답 일	2024.8.21.
추 계 번 호	24B2840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3 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)	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한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6항)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9조의3제5항 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))	• 미대상: 정부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([참고자료])
	안 제29조의3제6항 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한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그런데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규모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목, 감면율, 감면기간 및 보조금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

- 따라서 현시점에 지역발전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의 규모와 보조금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[참고자료] 2023 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』 표창 시상 및 설명회개최 결과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전국 혁신도시 시·도 및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, 2023년 지역발전 사업 우수사례 설명회 및 표창시상식 개최 결과

□ 행사개요

- 일시 : '24. 7. 11.(목), 7. 16.(화), 7. 18.(목) / 3일간 권역별 개최
 - － * 7.11. 전북테크비즈센터 / 7.16. 울산광역시 의회회의실/ 7.18. 충북음성 한국 고용정보원
- 참석 : (국토부) 지원협력과장 외 4, (시·도, 공공기관) 220여명
 - － * 7.11. 광주전남, 전북, 제주 / 7.16.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·북 / 7.18. 충남·북, 강원, 세종
- 주제 : 202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 표창시상 및 설명회
 - － 23년 시행 우수사례로 선정된 36건 공유, 11건 기관발표회
 - － 우수사례로 선정된 11건 중 이번 시상에서 제외된 4개 기관은 연말 정기포상에 반영계획

□ 주요내용

- 우수사례 장관표창 시상 : 5점*(전라권 2점, 경상권 3점)
 - － *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동서발전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시·도 및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 제도 취지와 지향점 전반 사항 공유, 우수사례 설명회 개요 및 배경 설명
- 우수사례 발표 : 11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 9개 기관별 PT
 - －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파급력이 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

전반 업무이해 제고 및 사업방향성 제시 등 효과 기대

□ 향후계획

- 우수사례 12개 시·도, 150개 공공기관 지침 인쇄물(300부) 배부
- 202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추진(~ '24.12월말)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